

제2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6. 2. 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81호로 2026년 1월 19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2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안 제3조 ~ 제4조)

다. 지원사업,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위탁(안 제5조 ~ 제7조)

라. 지도·점검, 표창,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6. 1. 20.~2026. 1. 2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돌봄 인력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 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정(2012. 2. 1., 시행 2012. 8. 2.)되었으며,
 - 법 1)제3조 및 2)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 1)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2)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한편, 영등포구 아이돌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영등포구 아이돌봄 현황

(단위: 명)

연도	2023	2024	2025	2026.1
인원	227	231	219	217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단위: 건)

연 도	계	종일제	시간제	틈새 3종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2025	148,735	3,910	105,371	39,401	53
2024	135,071	3,502	98,973	29,573	23
2023	112,311	8,302	103,324	영아전담서비스: 685	

- 24년도부터 틈새 3종, 둘째첫째사업 신설
- 23년까지 영아전담서비스 이름으로 사업 시행

아이돌봄미 처우개선 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지원 (국시구비)

- 영아돌봄수당: (25년신설)영아돌봄 시 아동 1인기준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26년변경)영아돌봄 시 아동 1인기준 시간당 2,000원 추가 지급
- 유아돌봄수당: (26년신설)유아돌봄 시 아동 1인기준 시간당 1,000원 추가 지급
- 야간긴급수당: (25년신설)야간긴급돌봄 1일 5,000원 추가 지급

○ 서울시 추가 지원(시구비)

-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사업(돌봄미 활동 추가수당, 활동장려수당 지급)
-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지원사업(영아전담/등하원/병원동행 활동 추가수당 지급)
- 아이돌봄미 예방접종비 지원(1인 35,000원 실비지원)
- 아이돌봄미 활동수당 추가지원(영아종일제 시간당 1,000원/시간제 시간당 500원 추가지급)
- 아이돌봄미 역량강화 특별교육 진행(기존 2회 -> 확대 4회)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아이’, ‘보호자’, ‘아이돌봄’,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개념을 정의하여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도록 책무를 규정함. 또한 보호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안 제4조(지원계획)는 아이돌봄 지원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정책목표, 재원 조달,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사업)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아이돌봄사 처우개선)는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노력 의무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아이돌봄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한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또한 돌봄노동자 대상에 포함

되어있으나,

- 동 조례는 돌봄노동자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본 조례안은 아이돌봄 및 아이돌봄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조례로서, 조문 간 충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데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위탁)**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활용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안 제8조(지도·점검)**는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이는 법 3)제28조 및 4)제29조에 근거하여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판단됨.
- **안 제9조(표창)**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0조(협력체계 구축)**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관련

3)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4)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칙은 개정된 상위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의 시행 시기를 규정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정의 및 용어를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고, 개정 전·후 규정 간 용어 불일치로 인한 해석 및 적용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한 것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맞벌이 가구 확대,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 아이돌봄 지원계획의 수립, 사업 범위의 명확화,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육아도우미”란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시행일: 2026. 4. 23.]

제4조(국가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아이돌봄사의 직무 및 책무) ① 아이돌봄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아이돌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안전하고 균형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아이돌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아이돌봄사는 보호자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여야 하며, 응급조치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6. 4. 23.]

제28조(지도 및 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9조(질문 및 검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서비스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운영·관리·제공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